

보도시점 배포시

배포 2025. 5. 16.(금)

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.

- 여신거래안심차단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구분하여 차단
- 안심차단서비스(여신거래, 비대면 계좌개설) 신청주체를 본인 외 가족으로 확대
- 상호금융권의 모바일 신청채널 확대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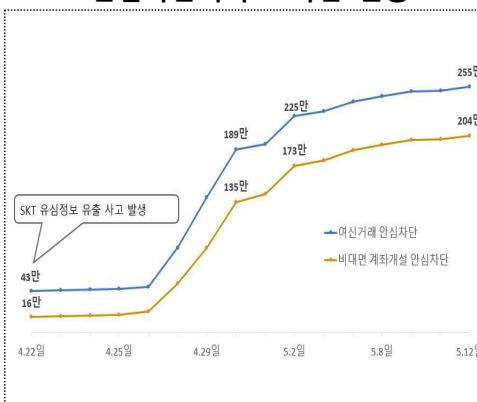
5.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55만명, 204만명*으로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특히 SKT 해킹사고 이후(4.22.~5.12.)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수가 각각 212만명, 18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, 이는 청장년층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

* 약 147만명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모두 가입하여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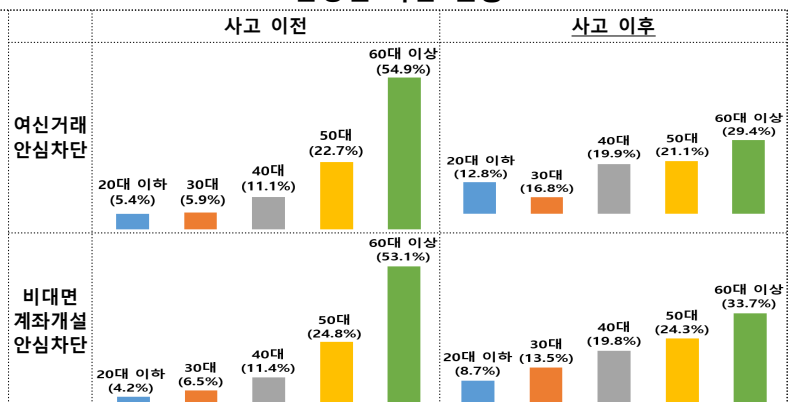
※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

- ① (여신거래 안심차단) 신용대출, 카드로, 신용카드 발급, 할부금융, 예·적금 담보 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('24.8.23일)
- ② (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)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('25.3.12일)

<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현황 >



< 연령별 가입 현황 >



■ 안심차단 서비스 개선의 주요 내용

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안심차단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다.

우선,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*된다.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, 담보대출, 신용카드 신규 발급,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어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. 금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 (Opt-out)할 수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* 기존 가입자도 선택사항으로 변경 가능 (붙임1 참조)

둘째,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*도 안심차단서비스(여신거래, 비대면계좌 개설)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.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. 이에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·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.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.

*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: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, 직계존비속, 외조부모, 외손자, 사위, 며느리

마지막으로,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.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.

* 농협조합(5월말 예정), 새마을금고 등 순차적으로 확대

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,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책임자	서기관	김영민 (02-2100-2573)
		담당자	사무관	유은지 (02-2100-2974)
<공동>	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	책임자	국 장	정재승 (02-3145-8150)
		담당자	팀 장	김태근 (02-3145-8130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가.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안심차단 선택사항 변경 관련**1.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기존 가입자도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?**

- ☐ 기존 안심차단 가입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이 유지됩니다.
- 다만, 기존 가입자도 5.16일 이후 안심차단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2. 신용카드 만기도래로 인한 갱신, 분실 교체시 안심차단이 적용되나요?

- ☐ 신용카드 갱신 및 교체, 체크카드 발급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 (신용카드 신규 발급만 적용 대상)

나. 임의대리인 서비스 신청 허용 관련**1. 임의대리인의 안심차단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?**

- ☐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(비대면 신청 불가)

2.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?

- ☐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서류*가 필요합니다.

*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인감증명서 등

3.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을 신청한 경우,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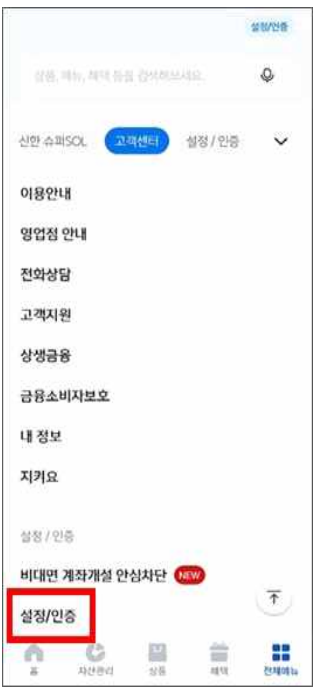
- ☐ 안심차단을 신청한 임의대리인 또는 본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- **(개요)** 보이스피싱,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특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
 - **(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)**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
 - **(여신거래 안심차단)** 신용대출, 담보대출, 신용카드 발급, 카드론, 할부·리스, 서민대출 등 모든 비대면 여신성 금융거래를 일괄 차단
 - 단,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안심차단 적용 여부를 별도로 선택 가능
- **(가입·해제방법)**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*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**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
 - * 은행,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우체국 등
 - ** 향후 농협조합,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
 - 서비스 해제는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
 -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, 필요한 금융거래 이후에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

(참고) 안심차단 신청화면 예시(은행 모바일 앱)

참 고

안심차단 신청화면 예시(은행 모바일 앱)

① '뱅킹홈 > 전체 메뉴' 클릭	② '설정/인증' 클릭	③ '보안서비스' 클릭	④ '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' 클릭
			
⑤ '차단 서비스 신청' 클릭	⑥ 차단범위 선택	⑦ 서비스 신청 완료	
		